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개정함

2. 추진경위

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제정 : '13.12월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시행 : '14. 1월

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 3월

-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저기준 정비·지원

라. 정부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 : '18.8월

- 생활SOC 공급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마.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18.12월

- 제2호 안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 심의·의결

3.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 국가·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인구밀도, 거주현황 및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공급을 시행

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으로 제시

- * (도서관) 현행 1곳/3만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다. 국민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 마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분류

- * (마을시설) 주차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등 도보이용시설
(거점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

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민간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시

* (기존) 주차장, 상수도, 공공체육시설 등→ (확대) 약국, 민간체육시설 등 포함

《붙임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문

《붙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신규대비표

《붙임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제7장 전문

《붙임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호 중 “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서비스시설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공간이 될 공동이용시설”을 “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한다.”를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 및 공공의 민간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로 정의한다.”로 한다.

제7.1호 중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 별표2 참조>”를 삭제한다.

제7.1.1호 및 7.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 마을단위시설

마을단위 시설은 국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치원

- (2) 초등학교
- (3) 도서관
- (4) 어린이집
- (5) 마을노인복지시설
- (6) 기초의료시설
- (7) 생활체육시설
- (8) 근린공원
- (9) 주거편의시설
- (10) 소매점
- (11) 마을주차장

7.1.2. 지역거점시설

지역거점 시설은 국민들이 문화·학습·의료·휴식 등을 위해 교통 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공공도서관
- (2) 사회복지시설
- (3) 보건소
- (4)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5) 공공문화시설
- (6) 공공체육시설
- (7)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제7.2호 중 “6개 부문 11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국내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를 ”마을단위 11개 , 지역거점단위 7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시설별 전국 공급현황, 국민들의 이용실태,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구밀도, 거주현황,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인구 50만명이 상의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유희시설의 현황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농어촌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고려한다.“로 한다.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 하여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별표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시 고려사항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p>1.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밀도 및 공급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전략계획/활성화계획에 포함) <p>2.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시설 수용능력(용량)도 고려 ②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휴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③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 개선 노력 <table border="1" data-bbox="220 952 742 1052"> <thead> <tr> <th>고밀(대도시)</th> <th>중밀(중소도시)</th> <th>저밀(농촌)</th> </tr> </thead> <tbody> <tr> <td>최소거리 + 용량</td> <td>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td> <td>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의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하고, 공급대상 시설이 거점시설인지 마을단위 시설인지를 고려하여 공급 ②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유휴시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유휴시설이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③ 신규 공급시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복합화)을 기본으로 하여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④ 인구저밀지역의 경우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 공급 ▶ 시설의 규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 당 면적,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의 기준에 맞도록 계획 수립 ② 설립조성, 운영비(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연간소요 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 <p>3.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는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을 활용하되, 주민중심의 운영조직, 사회적경제 주체 등의 육성을 위해 노력 ▶ 운영비용은 지자체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 징수, 수익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마련 노력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 용량	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 용량	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 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 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 편의	주거편의 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보건소		-	20분							
	의료 거점 (차량)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p>※ 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 하수도, 저류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p>											

《붙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p><u>7.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u></p> <p>과거 주택의 양적공급에 치중한 개발과 제조업 및 대도시 성장위주의 정책은 주거 이외 공원, 복지·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였고 인프라의 지역간 공급불균형을 초래하였다.</p> <p><u>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서비스시설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공간이 될 공동이용시설로, 이에 대한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은 도시의 팽창·성장 시기에 통용되던 주요 기반시설의 범위와 적정수준을 변화된 시대 흐름과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라 재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구도심을 비롯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u></p> <p><u>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u></p>	<p><u>7.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u></p> <p>과거 주택의 양적공급에 치중한 개발과 제조업 및 대도시 성장위주의 정책은 주거 이외 공원, 복지·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였고 인프라의 지역간 공급불균형을 초래하였다.</p> <p><u>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은 도시의 팽창·성장 시기에 통용되던 주요 기반시설의 범위와 적정수준을 변화된 시대 흐름과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라 재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구도심을 비롯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u></p> <p><u>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u></p>

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한다.

<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 별표2

참조 >

- ① 교통시설 : 주차장
- ② 공간시설 : 생활권공원, 근린광장
- ③ 유통·공급시설 : 상수도
-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어린이 집·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 ⑤ 방재시설 : 저류시설
- ⑥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신 설>

및 공공의 민간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로 정의한다.

< 삭 제 >

7.1.1 마을단위시설

마을단위 시설은 국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도보로 이

<신 설>

7.2 국가적 최저기준

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유치원
- (2) 초등학교
- (3) 도서관
- (4) 어린이집
- (5) 마을노인복지시설
- (6) 기초의료시설
- (7) 생활체육시설
- (8) 근린공원
- (9) 주거편의시설
- (10) 소매점
- (11) 마을주차장

7.1.2 지역거점 시설

지역거점 시설은 국민들이 문화·학습·의료·휴식 등을 위해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공공도서관
- (2) 사회복지시설
- (3) 보건소
- (4)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5) 공공문화시설
- (6) 공공체육시설
- (7) 지역거점공원(10만m² 이상)

7.2 국가적 최저기준

6개 부문 11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을단위 11개, 지역거점단위 7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시설별 전국 공급현황, 국민들의 이용실태,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구밀도, 거주현황,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유희시설의 현황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농어촌의

< 신 설 >

경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고려한다.

7.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 하여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붙임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제7장 전문

7.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과거 주택의 양적공급에 치중한 개발과 제조업 및 대도시 성장위주의 정책은 주거 이외 공원, 복지·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였고 인프라의 지역간 공급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은 도시의 팽창·성장 시기에 통용되던 주요 기반시설의 범위와 적정수준을 변화된 시대 흐름과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라 재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구도심을 비롯한 쇠퇴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 및 공공의민간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

로 정의한다.

7.1.1 마을단위시설

마을단위 시설은 국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유치원
- (2) 초등학교
- (3) 도서관
- (4) 어린이집
- (5) 마을노인복지시설
- (6) 기초의료시설
- (7) 생활체육시설
- (8) 근린공원
- (9) 주거편의시설
- (10) 소매점
- (11) 마을주차장

7.1.2 지역거점 시설

지역거점 시설은 국민들이 문화·학습·의료·휴식 등을 위해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공공도서관
- (2) 사회복지시설
- (3) 보건소
- (4)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5) 공공문화시설
- (6) 공공체육시설
- (7) 지역거점공원(10만m² 이상)

7.2 국가적 최저기준

마을단위 11개 , 지역거점단위 7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시설별 전국 공급현황, 국민들의 이용실태,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국가적 최저기준 수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구밀도, 거주현황,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소도

시는 유희시설의 현황 검토를,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농어촌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고려한다.

7.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 하여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별표 2]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시 고려사항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p>1.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밀도 및 공급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전략계획/활성화계획에 포함) <p>2.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시설 수용능력(용량)도 고려 ②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휴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③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 개선 노력 <table border="1" data-bbox="220 965 743 1066"> <thead> <tr> <th>고밀(대도시)</th> <th>중밀(중소도시)</th> <th>저밀(농촌)</th> </tr> </thead> <tbody> <tr> <td>최소거리 + 용량</td> <td>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td> <td>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의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하고, 공급대상 시설이 거점시설인지 마을단위 시설인지를 고려하여 공급 ②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유휴시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유휴시설이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③ 신규 공급시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복합화)을 기본으로 하여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④ 인구저밀지역의 경우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 공급 ▶ 시설의 규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 당 면적,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의 기준에 맞도록 계획 수립 ② 설립조성, 운영비(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연간소요 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 <p>3.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는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을 활용하되, 주민중심의 운영조직,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의 육성을 위해 노력 ▶ 운영비용은 지자체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 징수, 수익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마련 노력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 용량	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th> <th>분류</th> <th>시설</th> <th>세부시설</th> <th>최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마을 (도보)</td> <td rowspan="2">교육</td> <td>유치원</td> <td>국공립·민간</td> <td>5~10분</td> </tr> <tr> <td>초등학교</td> <td>-</td> <td>10~15분</td> </tr> <tr> <td rowspan="2">학습</td> <td>도서관</td> <td>공공·사립·작은도서관</td> <td>10~15분</td> </tr> <tr> <td rowspan="2">돌봄</td> <td>어린이집</td> <td>국공립·민간, 놀이터</td> <td>5분</td> </tr> <tr> <td>마을 노인복지</td> <td>경로당 노인교실</td> <td>5~10분</td> </tr> <tr> <td rowspan="2">의료</td> <td rowspan="2">기초의료 시설</td> <td>의원, 약국</td> <td>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td> </tr> <tr> <td>건강생활 지원센터</td> <td>10분</td> </tr> <tr> <td>체육</td> <td>생활체육 시설</td> <td>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td> <td>10분</td> </tr> <tr> <td>휴식</td> <td>근린공원</td> <td>도시공원</td> <td>10~15분</td> </tr> <tr> <td rowspan="2">생활편의</td> <td>주거편의 시설</td> <td>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td> <td>5분</td> </tr> <tr> <td>소매점</td> <td>-</td> <td>10분</td> </tr> <tr> <td>교통</td> <td>마을 주차장</td> <td>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td> <td>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td> </tr> <tr> <td rowspan="8">지역거점 (차량)</td> <td rowspan="2">학습</td> <td>공공 도서관</td> <td>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td> <td>10분</td> </tr> <tr> <td rowspan="2">돌봄</td> <td>사회복지 시설</td> <td>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td> <td>20~30분</td> </tr> <tr> <td rowspan="2">의료</td> <td>보건소</td> <td>-</td> <td>20분</td> </tr> <tr> <td>응급실 운영 의료기관</td> <td>-</td> <td>30분</td> </tr> <tr> <td>문화</td> <td>공공문화 시설</td> <td>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td> <td>20분</td> </tr> <tr> <td>체육</td> <td>공공체육 시설</td> <td>경기장, 체육관, 수영장</td> <td>15~30분</td> </tr> <tr> <td>휴식</td> <td>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td> <td>-</td> <td>10분</td> </tr> </tbody> </table> <p>※ 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 하수도, 저류시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p>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 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 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 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지역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 용량	최소거리 + 용량 + 유휴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 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 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 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지역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 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